

1. 宅地所有上限에 관한 法律施行規則中 改正令

建設交通部令 第68號 1996. 6. 22

주 요 골 자

- 가. 영 제11조 제1항에 의한 등록업자 또는 임대사업자외의 자가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5종에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규약의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함(제5조).
- 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일률적으로 2월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3월로 하여 현재보다 1월을 연장함(제12조의2 제2호 및 제3호).

개 정 이 유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서류

를”을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규약(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제1항중 “영 제18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을 “영 제18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영 제21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다목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택지소유자가 당해 택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1항의 확인을 신청함에 있어서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건축불가확인신청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하고, 제1항 제9호의 이주집단화확인신청은 별지 제12호의3 서식에 의한다.

제12조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부담금의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4천만원이하인 경우 : 납부고지서 발부일부터 2월

3. 부담금의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고지서 발부일부터 3월

별지 제4호서식 앞면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규약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경우에 한합니

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제4면 앞면의 “위 금액을 한국은행·한국은행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 부담금을 부과하니 위 금액을 한국은행·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로 하고, 동서식 제4면 뒷면의 안내말씀란중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의문사항은 지적과(계)(전화번호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회보